

의안번호	2216461
의 퇴 인	박상혁의원
회 답 일	2026.8.5.
추 계 번호	26D0609

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기금의 설치)	정부는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피해자보호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함)을 설치	의무규정
2	안 제4조 (기금의 조성)	기금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과징금, 과태료 수납액과 기금운용 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, 정부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의 직전 회계연도 징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5조 (기금의 용도)	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함 -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의 지원 -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정관에 명시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- 기금의 조성·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-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	의무규정
4	안 제6조 (기금의 관리·운용)	기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가 관리·운용하며(제1항),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5	안 제11조 (차입금)	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거나,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(제1항), 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함(제2항 및 제3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3조 (기금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조 (기금의 조성)	
3	안 제5조 (기금의 용도)	
4	안 제6조 (기금의 관리·운용)	
5	안 제11조 (차입금)	

2. 상세 사유

□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·용도 등(안 제3조부터 제6조 및 제11조)

- 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·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
 - － 기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을 지원하고,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정관에 명시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지원에 사용함
- 안 제4조제2항은 기금의 재원으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
 - － 해당 과징금과 과태료는 현재 일반회계에 수납되고 있으며, 부과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·과태료 부과 현황: 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부과액	징수액	미납액
과징금	199,992	197,220	2,731
과태료	1,166	459	632

자료: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제정안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개인정보침해피해자 소송지원, 개인정보 보호활동단체 사업지원 및 기금의 조성·운영에 사용하는 경우 신규 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, 제정안에 따른 지원금을 추계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건수와 소송비용 지원비율, 규모,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규모 및 기금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- 참고로,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26년 예산 기준 개인정보침해방지사업에 76억 6,500만원을 편성하고있음

[표 2]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방지 사업 예산: 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	내내역사업	예산
개인정보침해방지 (2034-301)	침해방지 및 실태점검	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	1,111
		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	1,066
		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	608
		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	431
		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원	192
		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기능 개발 운영	785
	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	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 삭제	1,892
		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체계 운영	1,550
	개인정보 침해방지 지원		30
	합계		7,665

자료: 개인정보 보호위원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na.go.kr